

보도 일시	2022.5. 3.(화) 조간 2022.5. 2.(월) 11:00	배포 일시	2022. 5. 2.(월) 06:00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지킴이” 가 나선다. - 해수부, 돌고래 관광 선박의 관찰가이드 이행 점검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이하 생태지킴이)” 10명을 5월 3일(화)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선박관광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보완·개정*하였다. 또한,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박 내부에 관찰가이드를 게시·비치하고 선박 운항 중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 선박접근 금지, 돌고래 접근 거리 별 선박의 속력 제한,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는 행위 금지 등 반영

특히, 생태·관광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지킴이’를 시범 운영하여 선박관광 업체들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지역 생태관광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점검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하고,

운영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생태·관광 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생태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점검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선박관광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찰가이드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 해양보호생물 관찰이나 관광 시 이동·먹이활동 방해 및 서식지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2백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 등 반영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수가 적고 오랜기간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이다.”라며,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인간에 대한 친화력이 뛰어나고 고래류 중에서 지능이 높은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해양보호생물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7m, 몸무게는 230kg 정도이며, 평균 수명은 30년으로 알려져 있다.

외형상 큰돌고래와 매우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체형이 더 날렵하고 부리가 길며, 복부에 반점이 산재해 있는 특징이 있다. 식성이 다양하여 각종 어류와 오징어류, 새우류와 같은 갑각류를 주로 섭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연안에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행동

▶ 돌고래 관찰은 항상 조심조심!

선박이 돌고래 가까이 접근할 때에는 모든 방향을 살피고 주의 깊게 움직여야 합니다. 선박은 돌고래를 쫓거나, 돌리거나, 이동 경로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항상 선박의 속력을 천천히 줄여야 하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돌고래와 친해지려면, 먼저 배려해 주세요!

돌고래 관찰은 한 시간 이내에 끝나야 하며, 무리에 새끼 돌고래가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돌고래가 선수를 타기를 하려고 접근하면 선박은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해야 하며, 돌고래가 흥미를 잃고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하여야 합니다. 앞초 회피 등 선박 및 관광객의 안전과 인근에서 조업 중인 해녀의 안전조업을 위해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선수파 타기를 유도하려고 돌고래 무리에 다가가는 절대 안 됩니다.



선수와 타기(Bow-riding)란?
우리 돌고래들이 뱃머리에서 선박이 일으키는 파도를 타며 노는 행위를 말해요.

▶ 돌고래를 방해하면 안 돼요!

돌고래가 수면 위로 점프하거나, 꼬리를 높게 흔들거나, 지느러미를 치는 것은 선박에서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확성기 등을 통한 통신은 최소화하며, 소나(음향 탐지기)를 비롯한 각종 수중음향장비는 재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선박을 이동시켜 주세요!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힐 때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나 급하게 잠수하여 장시간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변화가 관찰되면, 선박은 돌고래 무리에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또 관찰을 마치고 떠날 때에는 항상 돌고래 뒤쪽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돌고래 관찰 시 금지 사항



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속력 제한

돌고래와의 거리	선박 속력
1,500~750m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인다.
750~300m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이고 앞에서부터 접근한다.
300~50m	선박의 스크류를 정지해야 한다.

돌고래 관찰을 위한 거리와 방향 제한

전후방 접근 금지 구역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부터 천천히 접근한다.

드론 접근 금지 구역

드론을 사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할 때, 바다 표면에서 3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다.



접근 주의 구역 (300m~50m)

- 돌고래 반경 300m 부터는 속력을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한다.
-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미 두 척의 선박이 300m 이내에 존재한다면 순서를 기다렸다 접근해야 한다.

접근 금지 구역 (50m~0m)

-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단, 선박 정지 후 돌고래가 선박 주변으로 다가온 경우는 제외.)
- 모터보트와 작은 선박, 요트, 낚시배의 경우 50m 까지 접근할 수 있으며,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